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원3지역 봉양순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65호

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사회복지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 “출연금”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.

본 개정안은 주요내용으로는

조례 제5조·제6조·제8조·제9조의 1호1항 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”을
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”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
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